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 가.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찬성자 10명)
- 나. 의안번호 : 제 291 호
- 다. 발의일자 : 2018. 12. 21.
- 라. 회부일자 : 2019. 12. 28.

## 2. 제안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된 법률의 제명을 수정하고,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과 풍수해를 자연재해로 변경토록 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며, 알기쉬운 용어로 순환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을 “ 「물환경보전법」 ”으로 변경함. (안 제2조제4호, 제11조제1항, 제16조)
- 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수정함. (안 제10조제2항제3호, 제13조)

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으로 변경함. (안 제12조제1항제1호)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5. 검토의견

### ■ 개요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2017.1.17.)됨에 따라 수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용상에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 골자별 의견

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4호, 안 제11조제1항, 안 제16조)

- 안 제2조제4호, 안 제11조제1항, 안 제16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2017.1.17. 개정, 2018.1.18.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다만, 개정이 2017년 1월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서 지금까지 조례 개정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바 상위법 개정 시 적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제2조제4호, 안 제11조제1항, 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1. ~ 3. (생략)</p> <p>4.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u>「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u>의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p> <p>5.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del>_____ <u>「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u> _____</del></p> <p>5. (현행과 같음)</p>
<p>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28호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u>「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u>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지역내 저류시설에 한하여 빗물분당량 이상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p>	<p>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① _____</p> <p>_____ <del>_____ <u>「물환경보전법」 제53조</u> _____</del></p> <p>_____</p>
<p>제16조(비점오염원의 관리) <u>「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u>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또는 한강 또는 지천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p>	<p>제16조(비점오염원의 관리) <u>「물환경보전법」 제54조</u></p> <p>_____</p> <p>_____ <del>_____ <u>「보전을</u> _____</del></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나. 용어 정비(안 제9조제1항, 안 제10조제2항제3호, 안 제11조제1항제37호, 안 제12조제1항제1호, 안 제13조, 안 제16조)

○ 안 제9조제1항, 안 제11조제1항제37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제8판, 2017.12월)<sup>1)</sup> 외래어 표기 시 유의사항에 근거하여

1) 법제처, <http://www.moleg.go.kr/lawinfo/easylaw/data?pstSeq=84347>



38. ~ 44. (생략) ②·③ (생략)	38. ~ 4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 안 제10조제2항제3호, 안 제12조제1항제1호, 안 제13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2)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제5조3)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라는 용어가 각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으로 개정(2017.10.24.)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표 3]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제10조제2항제3호, 안 제12조제1항제1호, 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영향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2. (생략) 3.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u>풍수해저감종합계획</u> 에 의한 위험지구 4. 5. (생략)	제10조(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 1. 2. (현행과 같음) 3 _____ <u>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u> ----- 4. 5. (현행과 같음)
제12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u>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u> 및 개발사업 2. ~ 7. (생략) ② ~ ④ (생략)	제12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고 등) ① _____ _____ _____ ----- 1 _____ <u>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u> -----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풍수해대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제13조(자연재해대비) _____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3)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① ~ ③ 생략

다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u>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풍수해대비</u> 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 <u>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자연재해대비</u> --- -----
---	---

- 안 제16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이라는 내용에서 비점오염원이 수질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수생태계’를 삭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그러나 현행 제16조의 규정은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한 근거 조항으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수질보전 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표 4] 수정안 조문대비표(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비점오염원의 관리) <u>수질</u> <u>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u> 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 지역 또는 한강 또는 지천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제16조(비점오염원의 관리) <u>물환</u> <u>경보전법 제54조</u> ----- <u>보전을</u> ----- ----- -----	제16조(비점오염원의 관리) <u>물환</u> <u>경보전법 제54조</u> ----- <u>및 수생태계 보전을</u> ----- ----- ----- ----- -----